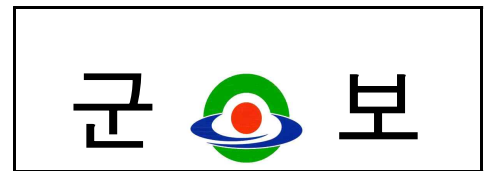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932호 2022. 9. 22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2-92호)
- 보호수 지정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2-9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**변경** 승인 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22일

예 천 군 수

- ①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- ② 사업효과 :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.
- ③ 변경내용 : 사업기간 연장.

승 인 조 서

사업명	위 치				승인 면적 (㎡)	사업기간	총소요 사업비 (천원)	사업 시행자
	시군	읍면	리동	지번				
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(개간)	예천	예천	지내	73-3	2,618	(당초) 2021.03.02.~2022.09.30.	105,300	정재*
				73-7	526	(변경) 2021.03.02.~2023.02.28.		

보호수 지정 고시

『산림보호법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22일

예 천 군 수

1. 보호수지정 예정내역

지정번호	소 재 지	수 종	수령(년)	수고(m)	흉고직경 (cm)	본수	비고
2022-01	경북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73	느티나무	190	13	126	1	

2. 보호수 지정 사유

- 노목으로 유전적,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.

3. 지정 및 고시일자 : 2022. 9. 22.(목)

4. 행위제한 : 산림보호법 제13조의 3

-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
-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

5. 문의사항 :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 산림녹지과(☎054-650-63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